

#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관리

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


#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 여러분!

1

모든 가축의 퇴비  
부숙도 적용기준

배출시설면적

후기·완료  
1,500㎡ 이상

중기  
1,500㎡ 미만

2

성분검사 주기

허가대상 농가  
6개월에  
1회 검사

신고대상 농가  
1년에  
1회검사

2020년 3월 25일부터 **검사 의무화!**

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 
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

# 부속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



▶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 
퇴비부속도 검사



▶ 농사로([www.nongsaro.go.kr](http://www.nongsaro.go.kr))  
최신 시험연구기관  
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



▶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 
지방농업진흥기관(농업기술센터)

# 퇴비 부숙도 '축사바닥(깔짚)' 관리요령!



▶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(수분70% 이하)  
수분조절재(톱밥 등)를 보충해 주며 관리

▶ 로터리 작업전, 환경개선제 살포

→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 
번식해 악취도 줄임

▶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 
주기적 교반 실시(주 1회 권장)

# 퇴비 부숙도 '퇴비사' 관리 요령!



- ▶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 
함수율 조절(65~75%)후, 스키드로더 등  
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
- ▶ 퇴비더미 쌓을 때 퇴비를 높은 곳에서  
천천히 떨어주듯이 쌓아서 퇴비와 공기의  
접촉을 높여줌
- ▶ 부숙 완료시까지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 
주기적(주1회이상)으로 뒤집어 줌
- ▶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 
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 
쌓기를 하면 효율적임

# 성분검사용 시료채취 방법!

\*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

1



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.

2



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,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.

3



퇴비더미 중 5~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.

4



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.

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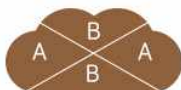
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.

6



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.

7



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.

8



3, 6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,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.

9



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(지퍼팩 등)에 넣고 밀봉한다.

# 반드시 기억하세요!

\*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,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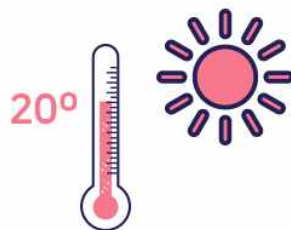
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 
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



시료에는 채취날짜, 시료명,  
주소, 시료내역 등을 기재



운송시 밀봉하여 온도, 직사광선에  
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



7~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,  
불가피한 경우 20°C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

#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함께 노력해주세요

## 과태료 및 벌칙 (가축분뇨법)

- ✓ 부속도 기준 준수 위반 시 :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,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
- ✓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: 과태료 100만원 이하
- ✓ 퇴비사 타 용도 사용시 :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